

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

심 사 보 고

1993. 3. 4

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3년 1월 27일

· 회부일자 : 1993년 1월 29일

다. 상정일자 :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건설위원회 (1993. 3. 4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국장 이 중 익)

가. 제안이유

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전문인의 심사와 심의로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 (건축법 제4조 제1항, 제2항)

나. 주요골자

-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선 지정사항 심사
- 21층 이상 41층 미만인 건축물 또는 100,000 m² 이상 300,000 m² 미만의 건축사전 심사
- 문화재 보호구역 (100 M) 내 건축 심의
- 건축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위임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부의하는 건축심의, 심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오 병 천)

- 건축법 제4조의 개정에 따른 이법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사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도록 명시되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으로 건축위원회의 조직,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
- 동 조례의 제2조 (구성)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20인 이내의 구성은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50인 이내 위원과 위배됨이 없으며,
- 동조제 제4조 (기능)에서도 건축법 제5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, 제3항 규정에 부합되므로 동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5. 토론 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 (참석위원 5인 만장일치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9. 심사보고 첨부서류

가. 충청북도 건축위원회 조례안 1부